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장애등급에서 장애의 정도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반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계법령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 선정기준을 장애등급구간이 아닌 장애의 정도로 변경하여 행정업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로 개정되어 해당 용어 변경(안 제6조)

나. 우선하여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명칭을 특정 대상자를 지칭하지 않는 용어로 변경 (안 제1조, 제4조, 제5조)

- 당초 : 장애인 등 → 우선대상자

다. 관계법령 상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로 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변경(별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노인장애인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로,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를 “이하 “우선대상자”
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등을 설치 허가할”을
“등의 설치 허가를 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은”을 “우선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 등”을 “우선대상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
으로, “장애인 등과”를 “우선대상자와”로, “장애인 등”을 “우선대상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용(설치) 허가”를 “사용·설치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설치)”을 “허가를 받은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설치)허가”를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전대 또는”을 “다시 남에게 대여하거나”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허가 만료일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 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조의 보호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3	등록장애인으로 비과세대상자	「노인복지법」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비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이하 "시" 라 한다) 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 ----- ----- ----- ----- ----- ----- ----- ----- 이하 "우선대상자"라 한다----- ----- ----- ----- ----- ----- -----
제3조(사전공고) 구미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제3조(사전공고) ----- -----

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허가
할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
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사용 및 자동판
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
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구
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제5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
록 하되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계약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② (생략)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

제2조에 따른
등의 설치 허가를
할
.

제4조(신청)
우선대상자는
.

1. (현행과 같음)

2. 우선대상자임

제5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①
제4조에 따른
우선대상자와
우선대상자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용·설치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

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u>사용(설치)</u>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u>사용(설치)허가</u> 취소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장 등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생략)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u>전대</u> 또는 권리를 양도 하는 것 3. (생략) ⑤ · ⑥ (생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② <u>허가</u>를 받은 자는 ----- ----- ----- ----- -----. ③ ----- <u>허가</u>----- ----- -----. ④ ----- -----. 1. (현행과 같음) 2. ----- <u>다시</u> <u>남에게 대여하거나</u> -----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생 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4.>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 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강 신 석
	담 당	박 정 희
	담 당 자	이 현 우 (480-5073)